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10. 29 선고 2024가단589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3. 10. 7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

판사 안은진

별지